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⑦ - 인평대군 치제문비(麟坪大君致祭文碑)-上

# 효종이 동생 인평대군 영령에 유제

## 비문은 숙종 19년(1693년)에 쓰고 경종 4년(1724년)에 세움



최 중 규  
포천영유회 회장



인평대군 치제문비(인평대군의 묘소 좌측0.4m 50m 지점에 있는데 정면 2칸, 측면 1칸의 7층 남짓한 비각을 만들어 2기 안치)

하는 바가 아닌 바 아니었으나 그 래도 천도의 기대를 바랐으나 어찌 복신 화음이 헛된 말임을 알았으랴? 병으로 누운 뒤로 몇 달을 보 지 못하며 울적한 마음으로 이기지 못하여 대신과 상의하고 가보니 병 색은 이미 8,9분(分)이 없어져 이 제는 병이 나아 출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때만 손뼉을 기다리면서 마주 대하고 즐기려 하였더니 안순 이 채 못되어 일조에 병이 덧쳐다 려어 정신없이 문고 넘어질 듯 달 러와보니 이미 미치지 못하였다. 구천에 한번 가니 종전의 슬픔을 어이하랴?

아! 경은 금육같은 바탕에 덕이 있고 행산도 있었으며 효우 총명하고 순수 운량하여 장수를 누려야 마땅하였건만 어찌 이다지도 빨리 죽었다던 말인가. 구슬에서 상서로운 빛깔이 부취지고 갈날에는 광채가 사라지듯 어두운 긴 밤 적막한 유 택만이 남아 나를 슬프게 하는도 다. 지난 일 길이 그리며 죽음을 추모하되나 슬픔만이 남는다. 천륜 풀죽이면서 말하기를 “무슨 예운의 불행이 이토록 심하더란 말인가?” 하였는데 해마다 행역을 치르느라 한 해도 편안히 쉬 겨를이 없었으 니 이별은 많고 만나기는 어려우며 복쪽을 바라보며 탄식해 보지만 모 두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 라서 통방한들 어쩔 도리가 없었 다. 먼 길에 녹초가 되고 수도에 상하여 영위가 손상되며 마침내 병 근이 깊고 굳어졌던 것이다.

오호라!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 으면 내가 반드시 갔었고 수고로움 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나라에 충 실하여 항상 말하기를 “나라 일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살기를 바라 라?” 하고 충분 강개한 마음을 버 리 지 않았다.

매양 북쪽 사방과 말할 때에는 일신의 이해는 돌보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려 격이 없었으나 그 성실함이 사람을 움직여 저들도 감 히 위엄으로 감주거나 협력하지 못 하고 너의 뜻에 고분고분 따랐으니 이 어찌 내가 두려워서 그랬겠는 가? 너의 지성에 감동되어 그랬던 것이다. 참으로 이른바 귀신에게 물어 보아도 꾸짖어줄 이유가 없 을 일이라 하겠다.

오호라! 너의 충성이 아니었더 라면 경인년(효종 원년, 1650) 고 평(股肱:중신)의 기구의 화에 누 가 사이에 들어 무뎠겠으며 가슴 이 짝이고 박절했건 이 마음을 누 가 풀어주었겠는가? 현량이 가벼웠 으니 국가는 누구에게 의지할 건 가? 시(詩)에 이르기를 공자유성(孔子維城: 공자는 나라에 간성이 라는 뜻)이라 하였으니 이는 너를 두고 이름이나마 따라서 내가 비통 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지난해의 일은 말하기도 곤욕 스텍다. 이 일로 더욱 울분을 못 이겨 병이 깊어졌다. 그래도 누웠 다 일어났다 하여 마음쓰지 않았더 나 초월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물져 누워 위급한 증상이 마음을 놀라게

(다음호에 계속)

###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⑩

# 수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노 영 민  
포천경찰서

형법권의 행사절차는 형사절 차라 하며, 수사절차는 형사절 차중의 한 단계이다. 이러한 수 사절차의 기본구조는 시대와 국 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연혁 적으로 수사절차는 구분주의적 구조와 탄핵주의적 구조로 대별 되며, 탄핵주의적 구조는 다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구조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구조 로 양분된다. 이러한 형사소송 의 구조는 수사체제에서도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룬다.

구분주의적 구조는 근대 초기 에 요청된 국가주의에 의거하여 형사소송절차가 확립되었다. 여 기의 모든 절차는 비밀주의·서 면주의였다. 이에 따라 고문도 인정되었고, 무죄의 판결은 일사 불재리의 효력을 갖지 못하였으 며, 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 판기관이 직권으로 심리를 개시 하여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 였다. 탄핵주의적 구조는 소추기 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부고부리원칙이 확립되었고, 피 고인도 소송주체로 되어 피고인 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자백을 위한 고문이 금지되었고, 피고인 도 소추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해졌다.

탄핵주의는 다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누어지는데 직 권주의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 인정하는 주의를 말하며, 당사자주의는 검사와 피고 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따라 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수사 체제는 형법권의 수행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여 보다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측면과 가깝고,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수사 체제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형법권을 실현하기 때문에 인권보장적 측면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륙법 국가주의적 사상을 기 반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들 은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의 통치 틀어가고 이슬은 아침 풀잎에서 사 라지는데 가슴은 울울하고 잣나무 삼삼하구나. 혈혈한 네 혼백에 유 유한 아내 심사야! 유명한 길 막히 니 백년 동포의 정이 이로부터 영 결이로다.

갑자기 여월에 걸러 친림의 예 절도 뜻대로 되 지 않는구나. 오호 라! 내 마음의 슬픔 어찌 풀이 있 겠는가? 유한이 무궁하여 관원을 보내서 대신 올리는 바이니 정사 다 일어났다 하여 마음쓰지 않았더 나 초월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물져 누워 위급한 증상이 마음을 놀라게

다수의 국가에서는 경찰에 독자 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 왔 으며,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제2차 대전 이후 로 경찰을 수사권의 주체로 인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각 국의 수사체제는 다음과 같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발전하 였다. 첫째로는 영국과 미국처 럼 사법경찰관만을 수사기관으 로 하고 검사는 단순한 소추기 관으로 공소권을 담당하는 경 우, 둘째로는 독일과 프랑스처 럼 사법경찰관을 상명하 복의 관계에 두고 법제상 검사 를 수사의 주체자로 하여 사법 경찰을 검사의 보조자로 하는 경우, 셋째로 일본과 같이 검사 와 사법경찰을 독자적·독립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권행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 휘를 받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만 지휘를 받게 하는 경우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 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초기 영국에서는 게르만법의 전통에 따라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가 그 근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사 회구조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범죄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사인 소추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어 사인소추와 함께 직권소추 가 병행하여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고 범 인을 검거하는 경찰이 차차 소 추를 병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진실발견이라는 측면과 가깝고,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수사 체제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형법권을 실현하기 때문에 인권보장적 측면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범죄수사는 대륙법체 계의 수사체제를 취하고 있는 스코틀랜드(Scotland)를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찰에 맡 겨져 있어 경찰만이 부심검문, 수단회화는 경향을 띠므로 확일 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검찰총수 를 정점으로 하여 일선 사법경 찰관에게까지 수직적인 상명 하복의 체제를 갖는다. 이에 반 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영미법계는 수사 기관간의 권력분립,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수사기관마다 독립 성이 유지되면서 상호협조체제 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현재 대

을 설립하여 검찰제도가 발생하 게 되었다.

그 후 1908년부터는 검찰청 공소국장이 경찰과 함께 소추주 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검사의 임무는 검찰청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이 지휘하는 특정사건 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속행하며, 반역죄·살인죄·국 가안전에 위법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장 이 직접 소추권을 행사하고 있 다. 공소국장은 형사소추와 관련 하여 경찰 기타 기관에 자문이나 조언을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소추 (police prosecution)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의 관계는 대륙법계의 국가처럼 상하복종의 관계에서 것이 아 니라 검사는 소추기관이고, 경찰 은 수사기관이라는 입장을 고수 하여 양자는 상호협력의 관계에 있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경찰주체 의 수사체제를 가지고, 다만 1946년의 범죄소추규칙에 따라 적정절차 수사관에 임명해 있다. 영국의 범죄수사는 대륙법체 계의 수사체제를 취하고 있는 스코틀랜드(Scotland)를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찰에 맡 겨져 있어 경찰만이 부심검문, 수단회화는 경향을 띠므로 확일 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검찰총수 를 정점으로 하여 일선 사법경 찰관에게까지 수직적인 상명 하복의 체제를 갖는다. 이에 반 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영미법계는 수사 기관간의 권력분립,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수사기관마다 독립 성이 유지되면서 상호협조체제 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현재 대

# “고객은 가슴으로, 안전은 지식으로”

## 산업재해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고를 신고하나?
  - 사망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 산재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 산재보상을 위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2가지중 한가지만 하면 됨)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 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종전의 년 1회에서 금년부터 년 4회로 늘렸습니다.
  - 자진신고기간은 매분기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의 1일~7일 사이입니다.
-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미신고로 인한 사법처리가능 유보됩니다.